

보 도 자 료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언론위원회 YMCA 과천시민회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 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가칭)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실무담당 : 청년정보문화센터 김형석(516-1542) 참여연대 이셋별(796-8364)

제 목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요구

날 짜 1996. 10. 19. (총 3 쪽)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제도 전면 철회 요구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94년부터 4월 7개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운전면허,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감, 지문) 41개 항목을 포함하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3.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분증 제도를 확립이라는 내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보안시스템을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전자주민카드 도입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전면 철회하기 위한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 -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5. 공대위는 11월 2일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시민사회단체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재 국민적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도입 전면 철회와 공공기관·사설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끝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도입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가칭)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정부가 총경비 2,735억원을 들여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 발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주민카드제도는 법적 근거의 미비라는 문제점과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의 신상에 관한 자료가 통합되어 있어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은 국민의 사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지존파 사건,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리자에 의한 연금 가입자 정보 유출 사례,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93년 한해 동안만 292만건에 이를 정도로 '개인정보 누출'은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산망과 네트워크로 통합한다면 제2, 제3의 지존파 사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재산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개인의 원적지와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는 정치적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향후 전자주민카드는 금융자산 정보를 포함할 계획까지 검토되고 있어 카드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도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생기게 될 문제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둘째, 전자주민카드 제도 추진은 그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을 현행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하여 그 법적 근거를 삼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예정인 7개 분야(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 운전면허, 국민연금, 인감, 지문) 41개 항목은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명 체계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시범실시까지 마치고 98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셋째, 보안 시스템을 안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21세기형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95년 안기부의 보안 감사 파문에서 드러나듯이公安 기관의 국민에 대한 감찰 시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안기부가 담당한다는 것은 가중된 감시와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전자주민카드 추진기획단에 안기부의 대공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주민카드가 21세기형 국민감시체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범죄자나 외국인에게만 채취하는 지문 제도, 이미 사회적 추세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을 온전히 유지하려는 한다는 점, 주소이동사항, 가족관계, 신체적 특징, 교통 법규 위반사항, 병원진료 사항, 연금 납부 내역과 분담 금액, 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감시 체계를 보존하겠다는 의도이다.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는 하나 지구상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보안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국민의 사적권리가 지금보다 침해당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미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정보 선진국에서는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라 크래킹(해킹)의 위협성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국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전자주민카드를 시행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해 정보선진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이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향후 공대위는 11월 2일 토론회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 형성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누출을 막고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 운동을 해 갈 것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공익소송을 통해 개인 정보의 불법적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의 중단과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 공동대책위원회의 요구>

1. 국민적 합의와 법적 근거 없이 진행 중인 전자주민카드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번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가칭)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국민의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YMCA 과천시민의모임 과학기술노동조합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보연대 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교회협의회인권센터언론위원회
(이상 가나다 순)